

2024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구로구청장

1. 신청대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 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의 해당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급규정 제7조의2 특례)

2.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신청서 접수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고
매월 10일까지 접수분	해당월 말일	
매월 11일 이후 접수분	다음달 말일	

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부서)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구청장(총무과)에게 제출

4. 대상자 결정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여부 결정

※ 소속기관(부서)장과 비위사실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에서는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총무과에 통보

【 제외 대상자 】

- 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마.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기간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6.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총무과에서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7. 행정사항

- 가. 총무과장은 수당지급 시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지급
-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고